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부 령 : 제2013-23호
공포일자 : 2013. 9. 2
전문참고 :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www.molit.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도한 환기기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3-686호
예고기간 : 2013. 9. 25 ~ 11. 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장(02-201-3587)
전문참고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규칙 제20조 별표 6)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2013-43호

예고기간 : 2013. 9. 10 ~ 10. 21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전문참고 :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4)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 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다.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登記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1 감리수행중 다른 현장 통합감리 가능여부

• 현재상황

- 00도시 조성공사로서 1, 2공구로 분할되어 시행

* 1공구의 단지내 전력시설물 간선설치공사 및 감리
용역은 2008년 계약되어 시행중임(진도율 60%)

• 질의내용

- 이미 계약되어 시행중인 1공구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추가하여 2공구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통합감리로 변경하여 추가설계 후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 참고사항 : 통합감리 수행시 지중배전설비의 관로
연결, 구조물 설치의 일원화 등 공정관리에 유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 현장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광역시인
경우 10km) 미만인 경우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으며,
운영요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초 1·2공구를 통합감리로 발주하지 아니
하고 1공구를 단독감리로 발주하여 공사감리 수행 중 2단지를
추가로 발주하여 통합감리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통합감리 수행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3. 2)

2 감리원의 성실의무 위반시 처벌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
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법 제12조제3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자
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벌칙이 있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의 성실의무는 감리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며,
- 선언적 내용이 광범위하고 불이익이나 처벌을 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조문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벌칙은 없습니다.

• 그러나, 이 법에서 감리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가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벌칙은 ①기술
기준 준수 의무(법 제10조제2항), ②감리원에 관한 증명서 대여
(법 제12조제6항), ③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법 제13조제1항),
④등록의 취소·영업정지(법 제16조), ⑤부실벌점 부과(PQ고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5. 26)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용량

- 한전공급 규정에 따라 전기사용신청을 변압기 500kW를 설치하고,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아 사용설비 250kW로 계약했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용량기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 또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는 500kW로 받아야하는지, 250kW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같은사업장내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선임 방법

- 동일회사 소유로 자가용수용설비와 사업용발전설비가 동일구내(설치된 위치 지번은 다름)일 경우, 한전배전선로와 접속점이 다름에도 하나의 설비로 보고 자가용수용설비 900kW와 사업용발전설비 1,500kW를 합산하여 2,400kW에 맞도록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2개의 설비로 본다면 개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사업용 발전설비는 소유자 소속기술자로 선임하고, 자가용수용설비(900kW)는 대행회사에 위탁선임이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동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3조(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정기검사)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설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12에,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7과 제32조 관련 별표 10에서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전검사, 정기검사의 용량은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아닌 수전용량을 나타내는 변압기용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즉,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변압기 용량 500kW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또한 변압기 용량 500kW를 기준으로 수검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7. 18)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사업장내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비상발전설비 포함)가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은 동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①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로 구분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②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를 통합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1,500kW)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자 소속기술인력을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11. 7)